

연료사용규제고시

1990년 1월24일

◎ 환경청고시 제90-3호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전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사용제한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 및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기준과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연료”라 함은 열의 공급·에너지의 제조등을 목적으로 연소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 “기체연료”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등 연료로서의 사용시 일정한 체적과 형상이 없는 유동성 연료를 말한다.
3. “액체연료”라 함은 일정한 체적은 있으나 일정한 형상이 없는 유동성 물질중 석유계의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알콜류의 메타놀 또는 에탄올 및 재생 또는 가공처리한 연료를 말한다.
4. “고체연료”라 함은 일정한 형상과 체적을 갖는 물질로서 석탄류 코크스, 신탄 또는 재생 하거나 가공처리한 연료등을 말한다.
5. “저유황유”라 함은 제11조에 정한 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말한다.
6. “유황함유량”은 연료용유류중 유황성분의 증량백분율을 말한다.
7. “석유제제작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1) 이 고시는 전기·태양열 또는 풍력등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난방용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 시설 및 산업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고시는 비상발전용 연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연료사용의 제한 또는 변경

제4조(연료사용규제 대상지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내의 사업장에서의 연료사용은 제5조 이하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 인천직할시,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미금시, 고양군, 남양주군의 관할구역
- 경기도의 하남시, 광주군, 김포군의 관할구역
-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및 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
- 전라남도의 여천시, 여천군, 경상북도의 포항시 및 경상남도의 울산시, 울주군, 김해시, 김해군, 양산군의 관할구역

제5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제4조 제1호·제2호(경기도 고양군은 제외한다) 제4호 지역과 제5호의 지역중 울산시·울주군내의 사업장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증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에 필요한 기술감리신청)를 제출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다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료사용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안의 열병합발전시설과 수원시와 안산시의 열공급시설의 연료사용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자기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에 한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정한 산업폐기물중 특정유해산업폐기물, 폐유, 폐합성수지류중 합성고무계·폐산 또는 폐알카리 및 폐고무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을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 폐합성수지류는 별도의 전용소각시설로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와 인천직할시 지역의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폐지·폐목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정한 폐합성수지류중 합성수지계에 한한다)로서 연료로서의 이용가치가 크고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6조(고체연료의 당연사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승인에 관계없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물공장등의 용해로 시설등에 있어 제조공정의 연소과정에서 광물성의 고체연료가 원료와 함께 사용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
- 제조공정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흡수·흡착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소성로, 석회소성로등 시설의 연료사용

제7조(저유황유의 사용) (1)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지역(경기도 고양군은 제외한다)내의 사업장에서는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저유황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유를 연료로 하는 전국의 모든 자동차에는 저유황경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유황유사용 대상 사업자(이하 “저유황유사용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배출되

□ 환경청고시 □

는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당해 시설에 저유황유를 사용한 경우의 배출 농도 이하로 되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연료의 대체
2. 배연탈황시설의 설치
3. 아황산가스가 흡수, 흡착등의 방법으로 공정중에서 제거되는 경우
4. 기타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제8조(발전시설의 연료사용) (1)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 지역내의 별표1에 정한 발전소에는 1992.10.1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여야 하나, 1992.9.30까지는 별표1의 “연료사용조건”에 정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인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1990.9.1부터 유황함량 0.3퍼센트 이하인 유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997.8.31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4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지역내의 화력발전소는 발전용연료로서 고체연료 또는 유황함량이 1.6퍼센트보다 높은 액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별표2에서 정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지역내의 업무용 열병합발전시설은 1992.10.1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업무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그 구조상(주로 내연기관식을 말한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받은 연료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수도권지역내 업무용 시설의 연료사용)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미금시와 남양주군 지역은 제외한다)내의 사업장중 열공급 시설 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업무용 시설(영업용 및 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의 난방연료 및 그 시행시기는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0조(수도권지역내 아파트의 연료사용) (1)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미금시와 남양주군 지역은 제외한다)내의 아파트중 이 고시 시행일 이후(제4조제2호지역의 경우에는 1991.1.1이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받은 중앙집중 난방 방식으로 열을 공급하는 아파트로서(여러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지내의 모든 세대(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평균 전용면적이 46.2제곱미터이상 82.6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유황함량 0.4퍼센트 이하의 유류, 82.6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난방연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4조제1호 및 제2호 지역(미금시와 남양주군 지역은 제외한다)내의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열을 공급하는 아파트로서(여러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지내의 모든 세대(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다)의 평균 전용면적이 82.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를

난방연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절 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기준

제11조(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기준) 환경보전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경기도 고양군은 제외한다)내에서 사용되는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유(벙커-에이(A)유 · 벙커-비(B) 및 벙커-씨(C)유): 유황 함유량 1.6 퍼센트이하
2. 경유: 유황함유량 0.4 퍼센트이하

제12조(유황함유량 분석방법) 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량의 분석은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제13조(시험분석기관) 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지방환경청
2.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석유품질검사소
4.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
5.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제 4 절 유황함유기준 초과유류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유황함유기준 초과 유류의 판매금지) 환경보전법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지역(경기도 고양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판매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유황유의 사용면제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한 유류공급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저유황유 사용계획 제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유황유사용자(유 함량 0.4퍼센트를 초과하는 유류의 사용자를 말한다)는 저유황유 사용개시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저유황유 사용계획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실적보고)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유황함량이 0.4퍼센트를 초과하는 유류의 사용자에 한한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저유황유의 생산 · 판매 및 사용실적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 · 비치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1)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에 액화천연가스(LNG) 와 액체연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버너를 설치한 경우의 사업자는 서울

□ 환경청고시 □

지방환경청장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액체연료 공급관의 봉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받은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중단사태등 액체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지방환경청장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관계공무원의 확인하에 봉인을 해체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다시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되지 아니한 가스공급중단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봉인이 자동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본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환경청고시 제87-24호(1987.9.11)와 환경청고시 제88-14호(1988.4.1)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폐지된다.

제3조(액화천연가스 배관망 미설치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LNG)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이 고시의 시행일 또는 각조항별 적용일 당시까지 액화천연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관망이 설치 완료되어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에 관한 이 고시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되, 해당 적용일 이후부터는 유황함량 0.4퍼센트 이하의 유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행한 조치등에 대한 경과조치) (1) 환경청고시 제87-24호(1987.9.11 “연료사용규제고시”) 또는 환경청고시 제88-14호(1988.4.1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기준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에 의한 승인등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거나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거나 행한 행위로 본다.

(2) 환경청고시 제7-24호(1987.9.11 “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하여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자” 중 서울시(환경청고시 제87-24호<1987.9.11>의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8.31이후 사용이 이미 금지되었음), 부산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지역내의 사업자는 1990.9.1이후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최근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여야 하는 아파트 중 1988.1.1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1992.8.31까지는 유황함량 0.4퍼센트 이하인 유류를 사용할 수 있다.